

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조승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32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18.

발 의 자 : 조승래 · 안도걸 · 김준혁
임미애 · 김영진 · 이주희
장철민 · 서미화 · 김성희
강준현 · 박용갑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, 해산 및 청산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,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일부를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법인,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잔여재산의 공공적 활용을 도모하고 있음.

그런데 사립대학의 폐지는 지역의 고등교육기반을 훼손하고 지역사회에 현저한 손실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, 지역 내 필수 서비스 제공 시설인 의료 및 보건기관 등 지역사회 수요와 기여도가 높은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.

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학을 인수하여 설립·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, 의료법인 등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을 잔여

재산 출연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사립대학 구조개선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정책이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고, 잔여재산의 공익적·효율적 활용을 도모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의2 및 제19조제1항제3호·제4호 신설).

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1010호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제2절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국가 등의 사립대학 인수 특례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립대학의 통폐합이 지역사회에 현저한 손실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지역사회 고등교육 기반의 유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의 장의 신청에 따라 그 사립대학을 인수하여 설립·경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사립대학 인수 및 설립·경영을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정비와 정책 수립 등 입법적·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인수의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9조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의료법」 제33조제2항제3호의 의료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

하는 법인에 대한 출연

4. 공익성,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한 출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법률 제21010호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<u><신 설></u></p>	<p>법률 제21010호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<u>제13조의2(국가 등의 사립대학 인수 특례) ①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사립대학의 통폐합 이 지역사회에 현저한 손실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지 역사회 고등교육 기반의 유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의 장의 신청에 따라 그 사립대학을 인 수하여 설립·경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의 의견 을 들을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 활한 사립대학 인수 및 설립· 경영을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정 비와 정책 수립 등 입법적·행 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제1항에 따른 인수의 방법 ·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

제19조(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) ①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 법인은 법인의 잔여재산 일부를 「사립학교법」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3.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제19조(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) ① -----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「의료법」 제33조제2항제3호의 의료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한 출연

4. 공익성,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한 출연

5. (현행 제3호와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